

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정진철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임산부 탑승 차량의 정의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허용 대상에 “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탑승 차량”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